



10·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
National Commission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October 29 Itaewon Disaster

보도자료

2026. 4. 1.(수), 즉시보도

피해자 권리보장
철저한 진상규명
재발방지 대책수립

담당자

대외협력과장 고영호(02-2650-1081), 담당자 이훈(02-2650-1085)

청문회 불출석 윤석열 前 대통령, 청문회 증인 선서 거부 김광호 前서울경찰청장 고발장 접수

- 10·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(위원장 송기춘, 이하 '위원회')는 1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윤석열 前 대통령과 김광호 前 서울경찰청장 고발장을 접수했다.
- 이번 고발장 접수는 10·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前 대통령과 증인 선서를 거부한 김광호 前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고발 조치를 의결한 데 따른 조치이다.
- 위원회 의결에 따라 윤석열 前 대통령의 청문회 불출석과 김광호 前 서울경찰청장의 증인 선서 거부에 대한 고발장을 각각 작성해 오늘 경찰청에 접수했다.
- 참고로, 2016년 세월호 진상규명 청문회 당시 불출석한 증인을 세월호 특조위가 고발하여 재판부가 벌금형을 확정된 사례가 있다. //끝//

※ 관련법령

[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] 제79조(벌칙)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3.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증언하지 아니한 증인